

예산군정책자문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

- 검토 보고 -

□ 제안이유

- 자치기반을 구축하고 변화하는 자치행정 여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문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높은 대학교수, 분야별 전문가, 일반군민 등을 대상으로 『21세기 정책을 만드는 사람들』을 구성하고자 하는 것임.

□ 주요골자

- 군에서 추진하는 중요 정책에 대하여 전의·자문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안 제2조)
-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20인 이내로 구성하되 분야별 전문가, 사회·시민단체 임원, 공무원, 일반 군민중에서 군수가 위촉함.(안 제3조)
-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정책 세미나, 포럼등을 통하여 관련전문가, 이해관계인 및 군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 정책방향을 결정하기 위해 위원회에 연구를 의뢰할 수 있으며, 상호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1조)

□ 관련법령 및 참고사항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자문기관의 설치)
- 서천군정책자문단설치및운영조례
- 입법예고(2003. 1. 15 ~ 2. 4)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검토의견

- 본 제정 조례안은 군정을 펼쳐 나가는데 있어서 수준 높고 미래지향적인 중요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이에 걸맞게 경험과, 덕망이 높은 각 분야별 전문가, 교수 등을 대상으로 예산군 정책자문 위원회를 구성하여 건의, 권고, 자문 등을 구하고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코자 하는 것으로서
- 제3조(구성)에 있어서 2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게 되어있는 바 국가적인 대단위 사업을 시행하는 것도 아닌 만큼 분야별로 볼 때 구성위원이 많은 인원은 아닌 것인지 설명이 필요하며,
- 제11조(연구 의뢰 등) 제1항의 정책방향 결정을 하기 위해 위원회에 연구 의뢰도록 하였는데 이에 따른 연구비용의 부담방법과 제2항의 관계기관, 단체 등과 상호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추진하는데 있어 절차 및 방법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
- 제13조(연구 및 토론사항처리)의 위원회에서 제외된 각급 정책대안이 최대한 군정에 반영되도록 하였는바 반영이 안된 정책대안에 대하여는 어떻게 하는 것인지 설명도 필요하다고 보며,
- 예산군군정위원회조례 제3조(조정사항) 및 제5조(의견서 청취)와 본 제정조례 제9조(정책세미나 등의 개최)와는 성질상 관계되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설명도 필요하고,
- 끝으로 본 제정조례안은 지방분권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우리군의 중요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 분야별 전문가의 자문 등을 매우 필요하다고 사료되나 제정된 조례를 근거로 많은 연구 검토 등을 토대로 운영의 성과가 이루어져 유명무실한 조례가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